

## 복구준공검사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허가(신고·매각·무상양여) 사항	소재지	사업목적	
	면적	기간	
복구사항	착공일	준공예정일	
	면적	복구에 든 비용	

「산지관리법」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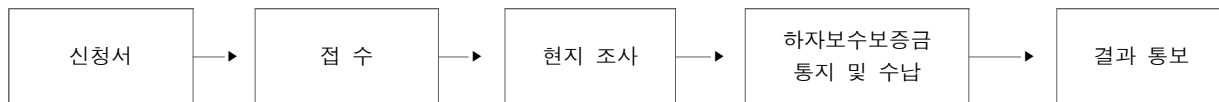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 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
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

첨부서류	지적측량 성과도 1부(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)	수수료 5천원
------	--	-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

신청인

담당처리기관: 제출기관부서